

「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·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역봉사지도원 위촉, 활동비 지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의2)
- 용어,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1조~제4조, 제4조의3~제4조의13, 제5조~제22조, 제24조, 제3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·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법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 지급과 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「노인복지법」과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겸직자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,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절차 및 활동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식적 위촉이 아닌 실질적 활동을 통해 경로당 운영 내실화 및 노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.